

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안동의의견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1. 7. 4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1. 7. 4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88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1. 7. 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강덕면)

제안이유

- 부천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키 위해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을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부천시문화재단의 정관(안)을 제정함
-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(안)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

주요골자

-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으로 함(안 제1조)
- 재단의 사업 범위를 규정함(안 제4조)
-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함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를 규정함(안 제9조)
- 재단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규정함(안 제17조)
-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함(안 제24조)
- 재단은 매년 3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함(안 제25조)
-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시의회와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(안 제34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안동의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507호 |
| 의결년월일 | 2001. 7. 14 (제88회) |

제출년월일 : 2001. 7. 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부천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키 위 해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을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부천시문화재단의 정관(안)을 제정함
-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천시문화재단 정관(안)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부천시문화재단으로 함(안 제1조)
- 재단의 사업 범위를 규정함(안 제4조)
-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함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를 규정함(안 제9조)
- 재단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규정함(안 제17조)
-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함(안 제24조)
- 재단은 매년 3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함(안 제25조)
-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시의회 동의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(안 제34조)

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(안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재단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목적을 한다.

제3조(소재지) 재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-2번지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부천시복사골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
2. 부천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
3.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·관리 및 보급과 조사연구
4.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
제5조(수익사업)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2장 임 원

제6조(임원) ①재단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상장 1인
2. 이사 15인 이내(이사장, 상임이사 포함)
3. 감사 2인

②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제7조(이사장) ①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
②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,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 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상임이사) ①상임이사는 이사회 의 의결과 시의회 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,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9조(이사)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

②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.

1. 시장
2.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
3. 한국예총부천지부장
4. 부천문화원장
5. 부천시 복지환경국장

③선임직 이사는 부천시의회 추천위원 1인과 한국예총부천지부 및 부천문화원 추천인사 각 1인을 포함할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 의 선임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.

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0조(감사) ①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1인과, 사의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.

②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재단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
2.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
4.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

제11조(임원의 임기) ①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,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다만,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2조(임원의 해임)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의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
②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.

제3장 이 사 회

제13조(설치 및 구성) ①재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이사회는 이사장,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제14조(회의)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 이사회는 연 1회,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.
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
3.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요구할 때

③이사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④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5조(의결 정족수 등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(서면의결)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

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 서면 의결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재단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5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6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7.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8.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8조(의결제척)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

제19조(회의록)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출석이사 1인과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4장 재산 및 회계

제20조(재산) ①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- ②기본재산은 재단 설립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-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재단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.

제21조(재산의 관리)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2조(사업연도)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.

제23조(경비의 충당)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, 기업의 협찬금 또는 재단의 사업수입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24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) ①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·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의 제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③재단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항을 부천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25조(결산서 등의 제출) ①재단은 매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26조(보고·검사·감사)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 및 시의회가 보고·검사·감사를 요청할 때에

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27조(임원의 보수) 상임이사를 제외한 재단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8조(감사의 실시)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장 사무부서 및 구성인원

제29조(사무부서)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두되 정원은 35명 이내로 한다.

제30조(사무부서의 조직) 사무부서의 조직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1조(공무원 파견요구 등)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2조(자문기구)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은 위촉할 수 있다.

제33조(수당과 지급 등) 제32조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장 보 칙

제34조(정관의 변경)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5조(해산)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6조(잔여재산의 귀속)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.

제37조(시행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최초로 구성되는 임원)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의 임원은 설립발기인이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과 제9조제3항의 선임직 이사 중 추천직 이사 3인으로 한다.

③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④(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)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이 기명날인 한다.